

예산총칙

제1조 :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341,812,592	10,254,378
1. 일반회계	331,740,077	9,952,202
2. 특별회계	10,072,515	302,175
의료보호기금	759,099	22,773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1,910,629	57,319
주차장	6,251,801	187,554
주거환경개선사업	194,082	5,822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574,577	17,237
기반시설사업	90,500	2,715
지하수관리	291,827	8,755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214,632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